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5일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

## 동해선 철도 복원 가시화 ... 대형 SOC사업도 날개

### / 기획 /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경제적 효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경제계는 남북이 오랜 정치적 대립을 풀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저성장 시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길 바라고 있다. 3회에 걸쳐 경제 분야별 기대심리와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살펴본다.

#### (1) 건설업계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증권가에서 토목·건설, 시멘트, 기계,

전기 등 SOC 업종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른바 '남북 개발 테마주'인 SOC 업종에 대한 높은 투자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도로 인프라 등 의제 가능성 건설 업계 생산성 활발 기대

도 연고 한라그룹·현대건설 투자 심리에 주가 연일 급등

도 연고기업인 한라그룹과 현대건설 주가는 4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다. 한라는 4,330원에서 6,420원으로 48% 치솟았다. 현대건

설은 지난 18일 이후 4만 550원에서 5만1,100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설업종지수는 12.62포인트(11.3%) 상승해 123.96을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도시개발이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가는 보고 있다. 통

계정에 따르면 북한의 고속도로 길이는 774km로 남한 대비 17%에 불과하다.

강원지역은 특히 대형 SOC사업인 '동해선 철도사업 복원'을 과제로 올려놓고 있다. 동해선 복원을 비롯한 SOC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내 건설업계, 시멘트, 에너지 대기업들의 생산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한반도 개발협력 을 위한 자체 사업비가 10년간 연

간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주택, 인프라사업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건설업계는 동남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북한 개발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 개발 등 새로운 경제사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5일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건협 강원도회, 오늘 춘천 베어스호텔서 정기총회



대한건설협회 강  
원도회(회장 오  
인철·사진)는 25  
일 오전 11시 춘  
천 베어스호텔  
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고 24일 밝혔다.  
총회는 회원사 구성원 보고를  
받고 2017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감사 보고,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하도급법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단순화 '최근 3년간 처분 횟수' 따라 부과

기업 규모와 위반횟의 금액비율 등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순해진다.

또 조사자료 미제출과 허위자료 제출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4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및 법체계 통일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1일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복잡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단순화하고 가맹법 등 여타 소관 법령과 일원화했다.

과태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부과하는데, 현행 기준은 기업규모와 위반횟의 금액비율, 위반횟의 건수, 범위반 전력 등 모두 4가지 요소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과태료 산정 및 부과기준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앞서 개정·시행에 들어간 대규모 유통업법 및 가맹법 등 여타 소관 법령의 과태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처분 전력이 많을수록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업규모 등에 대한 감경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출석요구

불응 및 조사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법률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석요구불응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 등과 같이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부담이나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법집행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되고 위반사업자의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권기자 skbond@

社說

도시재생 뉴딜, 나눠먹기식 안 된다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여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지난해 68곳에 이어 올해도 100곳을 사업지로 선정함에 따라 너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도 지자체가 신청한 220여개 사업을 심사하는 데 한달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사업 초기부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단기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라는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번에도 지자체 자율 선정 사업지가 70%를 차지함에 따라 나눠먹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임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후죽순격으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되면 지역특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거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해야 한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

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일반 근린형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심사해 뽑는다.

도시재생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눠먹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평가기간도 늘려야 한다. 단기간에 심도있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나마 창의성이 있다고 하는 민간사업들도 콘텐츠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100여곳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특화된 개발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가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설득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장기전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방정부에만 일임하지 말고 심사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사체계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